

# Hong Kong (SAR) Tax Alert

June 2023 | Issue 12



## 홍콩 조세거주증 발급 방식 변화

### 개요

홍콩세무국(IRD)이 홍콩의 조세거주증 (CoR,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발급의 처리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2023년 6월 12일부터 유효합니다.

홍콩이 맺고 있는 대부분의 이중과세협약/조세조약에 따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홍콩에 법인체 등이 설립된 신청자는 홍콩에 그 경제적실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없이 조세거주증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세무속보에서는 IRD의 조세거주증 발급 방식에 대한 주요 변화와 개정된 신청서식, 그리고 이에 대한 KPMG의 견해를 논하고자 합니다.



### 홍콩 조세거주증 발급 방식 변화

2023년 6월 8일, IRD는 웹사이트에<sup>1</sup> 홍콩 조세거주증 발급 방식을 재검토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발급과정의 변화에 따라 IRD의 홍콩 조세거주증의 발급은 관련된 **이중과세협약에 규정된 "홍콩거주"라는 단순한 용어의 정의에 근거하게 될 것입니다.**

홍콩이 맺고 있는 대부분 이중과세협정에서, "홍콩거주"는 홍콩에 설립된 회사와 홍콩 법에 따라 구성된 여타의 개체 (person) 로 정의됩니다. 일본과의 이중과세협정만이 예외적으로 "홍콩거주"가 홍콩에 주요 경영과 통제활동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IRD의 웹사이트에 홍콩에 설립되거나 수립된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조세거주증 신청서식에 그 설립과 사업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을 요청받지 않을 것이라 언급되어 있습니다.

### 홍콩 조세거주증 신청서식의 주요 개정사항

**2023년 6월 12일부터** 개인이 아닌 신청인 (회사, 파트너십, 신탁, 인적그룹)을 위한 조세거주증 신청서식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홍콩 조세거주증 발급에 대한 IRD의 입장 변화를 반영하고;
- 홍콩-중국본토간 이중과세협정과, 조세협약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세무총국의 Circular (STA Circular 2018 No. 9)와 관련하여, 행정적 촉진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sup>1</sup> 이와 관련해서는 본 뉴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rd.gov.hk/eng/ppr/archives/23060801.htm>

## Hong Kong (SAR) Tax Alert

현재 IRD의 행정촉진책 상, 홍콩조세거주증은 다음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i) "safe harbour rule" 인정을 받는, 조세조약상 신청자 (중국 본토로부터 배당을 직접 수령하는 홍콩 SPV)와 그 최종 / 직접 100%주주, (ii) 조세조약 상 신청자와 "동일지역 규정 (same jurisdiction rule)"에 따른 배당수익에 대한 수익적소유자로서 그 100%최종 모회사 혹은 (iii) 조세조약 상 신청자와 "STA Circular 2018 No. 9 상 동일 조세조약 혜택 규정 (same treaty benefit rule)"에 따른 그 직접 100% 주주 개정된 신청서식 (Form IR1313A and Form IR1313B) 은 본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식의 주요 변화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Form IR1313A – 중국/홍콩 이중과세협약 목적 상

- |  |  |
|--|--|
| 1. "Item 6 - Other Information" 부분이 추가됨                | 아래와 같은 경우, 서식과 Appendix를 함께 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청자가 홍콩 역외에 설립/수립되었거나;</li><li>조세협약 혜택 신청이 배당, 그리고 STA Circular 2018 No. 9와 관련이 있는 경우.</li></ul>            |
| 2. Form IR1313A의 Appendix가 개정되어 두 부분 (Part 1, 2)으로 구성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Part 1은 홍콩 역외에 설립/수립된 신청자가 홍콩내의 그 경제적 실질에 대한 세부 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li><li>Part 2 의 경우 STA Circular 2018 No. 9와 관련된 일괄신청의 경우 작성되어야 함.</li></ul> |
| 3. 서식에 대한 Note 3부분이 추가됨                                | 해당 Note는 조세거주증 신청이 (i) 배당에 대한 혜택, (ii) STA Circular 2018 No. 9상 "safe harbour rule", "same treaty benefit / same jurisdiction rule"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가 Appendix의 Part 2를 작성하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

### Form IR1313B – 여타 이중과세협약 목적 상

- |   |   |
|---|---|
| 1. "Item 5 - Other Information" 부분이 추가됨 | 아래와 같은 경우, 서식과 Appendix를 함께 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청인이 홍콩 역외에 설립 / 수립된 경우이거나;</li><li>조세협약 상 혜택이 홍콩/일본간 조세협약에 따르는 경우</li></ul> |
| 2. Form IR1313B에 대한 Appendix가 개정됨       | 홍콩의 경제적 실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 KPMG의 논평

IRD가 채택한 홍콩 조세거주증 발급절차의 변화와 서식 개정은 환영받을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3년 6월 12일부터 유효한 바, 홍콩에 설립/수립된 대부분의 홍콩 조세협약 상 신청인은 홍콩 조세거주증을 간단히 입수할 수 있을 것이며 홍콩에서의 경제적실질에 대한 평가 혹은 홍콩 역내의 설립존재와/혹은 그 사업활동에 대한 세부 증빙정보 제출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콩의 이중과세 협약 상 조세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 홍콩 조세거주증 확보가 항상 상대방 국가에서의 조세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히 "주요 목적 테스트 (Principal purpose test)"가 조세협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 현행 조세협약들의 협상 과정에 포함되거나 OECD 다자간 협상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콩거주기업은 여전히 해당 조세협약 상대국에서 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홍콩에 충분한 경제적 실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개정된 역외소득 비과세제도 (FSIE)에 적용을 받는 법인들은 역외원천의 배당, 이자, 로열티 및 지분처분 소득이 있는 경우 특정 경제적 실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혹은 참여면제제도 요건 충족: 배당과 지분처분 소득의 경우). 특히나, 역외원천의 지분처분 소득이 있는 홍콩거주기업이 홍콩의 조세조약을 통해 역외에서 조세 면제를 받는 경우, 참여면제제도 상 15%기본세율 적용 조건의 충족되지 않아 해당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홍콩에서의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kpmg.com/cn/socialmedia](https://kpmg.com/cn/socialmedia)



For more KPMG Hong Kong (SAR) Tax Alerts, please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website:  
<https://home.kpmg/cn/en/home/services/tax/hong-kong-tax-services/hong-kong-tax-insights.html>



For a list of KPMG China offices, please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website:  
<https://home.kpmg/cn/en/home/about/offices.htm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Huazhen LLP, a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nership, KPMG Advisory (China) Limited,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Chinese Mainland, KPMG, a Macau (SAR) partnership, and KPMG, a Hong Kong (SAR) partnership, are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2023 KPMG Tax Services Limited, a Hong Kong (SAR)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